

## 보도자료

2011년 7월 7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
가.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과장(2350) 나.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과장(2410)  
다. 뉴미디어정책과 김정원과장(2450)

[보고안건]

가.,나. 방송진흥기획과 이태희과장(2310)

# 2011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

### [의결안건]

#### 가.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첨부1 참조)

-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제작협찬 허용, 외주제작 인정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#### 나.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

-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,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부수 인증기관을 심의하여 의결함

지정기관	지정기간
사단법인 한국ABC협회	1년 (2011. 7. 20. ~ 2012. 7. 19.)

< 관련 법령 >

□ **방송법 제8조제4항**

-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(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)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전체 발행부수,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함**

□ **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**

-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문의 **부수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**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**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**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

**다.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(주)에스비에스와 (주)케이티 스카이라이프 양사 의견청취 및 행정조치에 관한 건**

- 수도권역의 SBS HD방송 송출 중단(총 48일: '11.4.27. ~ '11.6.14.)으로 시청자(약 48만)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됨에 따라, (주)에스비에스 및 (주)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의견청취 후 행정조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

- 위성방송 수도권역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재발 가능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사에 '서면경고' 처분하기로 의결함

## [보고안건]

### 가. 「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방안」에 관한 사항 (첨부2 참조)

-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편적시청권의 미비점을 개선하여, 올림픽·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※ 방송법('07.1월)·시행령('08.2월) 개정으로 도입되어, 올림픽·월드컵은 90%, 아시안게임·WBC·축구A매치는 75% 이상의 가시청가구비율 지정

### 나. 「방송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3 참조)

-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보완,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

## **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**

### **□ 추진배경 및 경과**

- (배경)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방송사에게 제작협찬 허용, 외주제작 인정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 법적 미비사항 보완
- (경과) 개정안 전체회의 보고(3.23.),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(3.29.~6.24.)

### **□ 주요 개정 내용**

#### **① 편성비율 및 협찬고지 관련사항**

-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'매분기'에서 '매반기'로 변경(제57조제1항)
-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(제57조제7항)
-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근거 마련(제58조제5항)
- 자막광고로 분류하지 않는 항목에 '방통위가 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 안내 또는 고지'를 추가(제59조제2항)
-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협찬고지를 허용하되, 서울 권역 지상파(K·M·S) TV프로그램은 방통위 규칙에 따라 허용(제60조제1항)

## ② 기타사항

- **보훈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 명칭·인용조문 등 수정**(제15조의2 제5항, 제44조제1항 등)
  - ※ 「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→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등
- **SO가 특정 PP에 임대하는 채널수를 제한함에 있어, PP의 범위에 특수관계자도 포함**(제53조제2항)
  - ※ 채널수 제한규제 : 전체 TV방송채널수의 20/100 범위 내에서 특정 PP에 채널 임대 등
- **중앙전파관리소에 업무 위임 추가**(제68조제1항)
  -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·과징금 처분(법 제18조제1항, 제19조제1항),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(법 제71조) 등

## □ 향후계획

- 법제처 심사('11.7월),
- 차관·국무회의('11.8월)

##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방안

### □ 추진배경

- '07. 1월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나, '10년 SBS의 올림픽·월드컵 단독중계 과정에서 방송사간 갈등 해결에는 한계
  - ※ 보편적시청권 정의(방송법 제2조제25호) :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
- **현행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** 올림픽·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강화

### □ 주요내용 : 방송법령 개정 추진

- (정의 구체화) 정의에 '추가비용 부담 없이'를 추가하여, 기존 시청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
- (중계 가능 방송사 사전 고시) 현재는 중계방송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인지를 가시청가구비율 충족여부로 사후 판단
  - 불필요한 방송커버리지 논란 불식을 위해 중계방송 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, 이를 만족하는 방송사를 사전에 지정·고시하는 방안 추진
- (가시청가구비율 강화 및 국민관심행사 조정) 가시청가구비율을 90/100으로 단일화하고, 대상 경기를 축소·조정(시행령·고시 개정)

#### <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(안) >

현행		개정(안)		
비율	대상행사	비율	대상행사	구체화 수준
90/100	동·하계올림픽	90/100	동·하계올림픽	현행 유지
	FIFA 월드컵		FIFA 월드컵	한국경기 및 개막전·준결승·결승전
75/100	아시안 게임		아시아 경기대회	정식 명칭 사용
	야구 WBC		야구 WBC	한국경기 및 준결승·결승전
	축구A매치	축구 A매치	현행 유지	

- (금지행위 상향입법 및 구체화) 방송법 시행령의 금지행위(제60조의3)를 타법 선례에 맞춰 상향입법하고, 세부기준은 시행령 및 고시로 제정
  - 금지행위 중 정당한 사유, 실시간 방송, 뉴스 자료화면 제공 등의 기준
- (금지행위 신설) 신설되는 중계 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제도 등과 기존 순차편성 권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지행위 신설
  - ①가시청가구비율이 90/100 이상일 것, ②일반 국민의 추가비용 부담이 없을 것, ③사전 지정된 방송사업자가 하나 이상 중계방송권자에 포함될 것, ④국민관심행사를 전체 방송시간의 50/100 이상 편성하지 않을 것

## □ 향후계획

-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('11.8월)
-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('11.9월)

## 방송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

### □ 추진배경

- 현행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올림픽·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청권 보장 강화
-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, 간접광고 허용 등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 마련
-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과 관련한 법적 미비사항 보완

### □ 주요 개정 내용

#### ① 보편적시청권 관련

- (정의 구체화) 정의에 '추가비용 부담 없이'를 추가하여, 기존 시청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
- (중계 가능 방송사 사전 고시) 사전적인 가시청가구비율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중계 가능 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, 이를 만족하는 방송사를 사전 지정·고시
- (금지행위 상향입법 및 구체화) 방송법 시행령의 금지행위(제60조의3)를 타법 선례에 맞춰 상향입법하고,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
- (금지행위 신설) 정의 구체화, 중계 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 신설 등에 따른 금지행위 신설
  -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시청가구비율을 만족할 것
  - ②일반 국민의 추가비용 부담이 없을 것

- ③하나 이상의 사전 지정 방송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할 것
- ④국민관심행사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지 않을 것

## ②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 관련

- (외주제작사 정의 신설)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 외주제작사의 법적 정의 신설
- (간접광고 정의 개정) ‘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광고’를 ‘상품, 서비스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’로 개정하여 대상품목 명확화
- (간접광고 허용주체 확대) 기존의 방송사업자에 더하여 외주 제작사가 간접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
- (기타)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 등

## ③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

- (결격사유 근거 마련)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및 방송 편성책임자에게 타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결격사유(외국인, 미성년자 등) 부여
- (허가유효기간 단일화) 지상파방송, 위성방송 등과 동일하게 허가 유효기간을 전파법령으로 일원화(방송법에서 삭제)

## □ 향후계획

- 방송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(11.8월)
-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(11.9월)